

한국부동산원 2024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

「건축법」 제25조제14항 및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*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* 표준조례(안) 운영지침 :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.

용 도	공사비(원/m ²)
다가구 주택	2,029,968
아파트	1,880,518
연립 주택	2,264,246
다세대 주택	2,005,718
다중주택	2,081,968
오피스텔	1,920,232
근린생활시설	1,868,123
창고	847,857
공장	1,038,000

<산출근거>

- 1. 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4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산출하였음
- 2. 산출방식 : 용도별 (건물표준단가+부대설비단가)의 평균값을 적용하였음

<적용사항>

- 1.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(m² 기준)
- 2. 적용시점 : 2024년도 용도별 평균값을 시달한 이후 착공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
- 3.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상의 실 공사면적* 단가(m²)를 산출한 것을 말함
 - * 실 공사면적은 필로티 및 발코니 면적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함
- 4. 공사비는 시스템 에어컨과 승강기 설비비를 포함함
 - * 시스템 에어컨 설비비 제외대상 : 오피스텔, 근린생활시설, 창고, 공장
 - 승강기 설비비 제외대상 : 창고, 공장
- 5. 창고, 공장의 경우 부대설비 값에서 냉·난방설비 값을 제외하여 산출함
- 6. 연립주택은 고급형과 일반형 연립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
- 7.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신설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평균값으로 산출함

※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파트는 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제5조제3항에 따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, 대한건축사협회, 한국주택협회,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정한 「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」의 내용으로 산정